

"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구역" 불법주차·충전방해 행위 홍보안내

(자료제공 : 환경정책과 친환경자동차팀 ☎ 054-270-3791)

『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, 친환경차에 양보해 주세요.』

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」 일부개정 시행에 따라 2022년 1월 28일(금)부터 **모든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구역 내 불법 주·정차 및 충전방해 행위 등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됨**을 알려드리니,

친환경자동차 이용자의 충전행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과태료 부과대상시설 확대 → 집중 홍보·계도

◎ 관 련 법 :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및 제16조

◎ 시행시기 : **2022. 1. 28. (금) 부터** (경상북도→시·군 단속 권한 이관)

◎ 대상시설

모든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전기차 충전시설

- ▶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차량 : 전기차, 하이브리드차, 수소차
- ▶ 전기차 충전시설 주차가능 차량 : 전기차, PHEV(플러그인 하이브리드)

부 과 기 준

- ①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: 10만원
(충전구역 및 진입로 등에 물건 적치 및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 등)
- ②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한 행위 : 20만원
- ③ 급속충전시설에서 충전 시작 후 1시간 경과까지 계속 주차하는 행위 : 10만원
- ④ 완속충전시설에서 충전 시작 후 14시간 경과까지 계속 주차하는 행위 : 10만원
(단독주택,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,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 설치된 것 제외)

전기차 충전시설등 설치 확대

◎ 설치대상

- ▶ 현행 : 신축하는 주차면 100면 이상 공중이용시설 또는 500세대 이상 APT
- ▶ 개정 : 신축 또는 기축된 주차면이 50면 이상의 공중이용시설 또는 100세대 이상 APT

◎ 설치비율

- ▶ 현행 : 주차면 100면당 1기
- ▶ 개정 : 신축시설 → 주차면 총수의 5% 이상
기축시설 → 주차면 총수의 2% 이상

(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의 충전시설 등 / 설치기한 : 공중이용시설 2년, APT 3년)